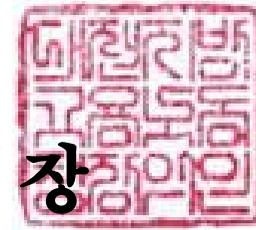
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12. 17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김혜O	1971.03.03	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(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직업안정기관 방문 의무 불이행 및 연락두절)	○ 취업지원 종료 및 처분일로 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56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2.12.17 ~ 2022.12.3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진숙 (Tel. 044-861-896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